SURVEY AND RESEARCH ARRANGE ISSUE

이슈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 Ⅰ 서론
- II.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Ⅲ. 업무 관련 유의 사항
- Ⅳ 결어

문하 영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대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법률로써 공포되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 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동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그 첫 발을 떼었으며, 공직자등에 대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안 마련에서부터 국회제출 법의 제정 및 공포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시행된 동법에 관하여 본 이슈정리를 통해 법상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공공기관 업무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론

지난 12월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 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¹¹하였다. 해당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동법 위반으로 최초 처벌된 사례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7일 법률로써 공포되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래 법안 제정 과정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헌법소원까지 진행되었 으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²⁾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이슈정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의 내용. 금품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하고.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 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적용대상자는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의 장과 임직원(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③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 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공적업무 종사자 ④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⑤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이다. 3)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였던 기존 형법과는 달리 공 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법 률의 제재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¹⁾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전국1호 위반 '떡값의 2배' 과태료 9만 원 확정", 2016.12.16.

^{2) 2015}헌마236, 412, 662, 673 위헌확인 사건 병합

³⁾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첫탁 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표1 참조)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하을 남 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패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대상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부정청탁의 내용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 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청탁 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동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재화ㆍ용역에 관련한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 인 거래조건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 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

[표 1]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의 유형⁵⁾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의 유형[법 제5조1항]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 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⁴⁾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⁵⁾ 법무법인 지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내용과 의미, 2015.3.5.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의 유형[법 제5조1항]

-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1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13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15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은 (1)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 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 의 등을 하는 행위 (5)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다.

(1)의 경우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이미 제도적으로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의사소통 절차에 관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의사의 표현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의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 미6이며 (2)~(6)까지의 예외 사유도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정당한 의사소통으로 범위 내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외사유 중 한 가지로 '(7)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한 까닭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서 모든 절차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유를 법률에 정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불가능한 것 에 가깝고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리에 비추어 보아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는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2)소속기관의 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 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3)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⁶⁾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⁷⁾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2003, 9.26, 선고 2003도3000)

[표 2]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⁸⁾

	구성요건	지기 사자
행위주체	유형	제재 수준
01=11=11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이해당사자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기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금품등'의 수수금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형법」상 뇌물죄와는 달리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규제의 사각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관련 판단기준은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회'에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은 자연적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가 아닌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며,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의 의미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할 것¹⁽⁰⁾ 이나, 현재는 확립된 판례가 전무하므로 향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적립될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이란 (1)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2)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⁸⁾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2016.

⁹⁾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¹⁰⁾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참고로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도5753)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 므로 매우 중요하며 그 기준시점은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 용으로 하고 이름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공자의 경우 누 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만,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수 수만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가 가능한 금품등의 유형을 규정한 8가지 예외사유(표3 참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 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 수수 가능한 금품등의 유형

	수수 가능한 금품등의 유형			
1	허용되는 범위의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 등			
2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5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7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금품등 가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12)

¹¹⁾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¹²⁾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 제23조 제5항 제1호에서 제3호

4.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첫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부 강의 등으로 과다한 사례금 을 수수 받을 경우 우회적인 금품수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려¹³하여 동법에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례금 의 상한액을 제한하여 초과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인 경우를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 우는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더불어 소속기관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 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제한도 가능하다.

공직자등이 (1)사전신고를 불이행하거나.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 의무는 불이행한 경 우.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 며 (2)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¹⁵⁾

¹³⁾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¹⁴⁾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¹⁵⁾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동조 제5항. 제23조 제4항

Ⅲ. 업무 관련 유의 사항

1. 부정한 청탁에 관한 판단

청탁금지법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그 유형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개개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는 어떤 요청이 부정한 청탁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정 부나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업무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존 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對)정부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 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 법한 의견표명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아직 동법에 따른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관계로 일응 보수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체적인 행동규범의 설정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정부기관은 물론 유치권·대학교 등의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 기관 의 280여만 명(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산할 경우 법 적용대상자는 4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⁷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범위를 생각해보다면 모 든 영역에서 첫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은 대(對)고객 마케팅·홍보 등 의 업무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첫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첫탁 급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¹⁸⁾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지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과 청렴자문위원회의 우영을 통하여 자체적인 행동규범을 세우고 법령 위반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다.

¹⁶⁾ 법무법인 세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2015,3,16,

¹⁷⁾ 머니투데이, "시행 두 달째 청탁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2016.12.11.

¹⁸⁾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2016.

Ⅳ. 결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¹⁹⁾종래에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위법한 행위를 제재하는 규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나, 식사나 선물·경조사비의 상한 금액을 법령으로 제정한 것은 청탁금지법만의 차별적인 입법례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대해 열거하였으며 법 적용대 상자들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적용대상도 우리나라 성인인 국민 총수의 1/10에 해당²⁰⁾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동법 시행 후 2달간 경찰서에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접수한 건도 350여 건²¹⁾에 달하여 국민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법인 자체로서, 그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임직원은 업무를 함에 있어 공공기관 내부의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렴자 문위원회의 판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얻어 그 행위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이슈정리의 첫머리에 과태료 9만 원 결정을 받은 사인(私人)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였다. 이 법이 우리의 일 상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¹⁹⁾ 청탁금지법 제 1조

²⁰⁾ 머니투데이, "시행 두달째 청탁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2016.12.11

²¹⁾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 간 경찰 신고접수 348건", 2016.11.28

〈참고자료〉

1. 간행물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6.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2016.
- 법무법인 지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내용과 의미, 2015.3.5.
- 법무법인 세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2015,3,16.

2. 신문기사 및 웹사이트

-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전국1호 위반 '떡값의 2배' 과태료 9만 원 확정". 2016.12.16.
- 머니투데이, "시행 두 달째 청탁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2016.12.11.
-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간 경찰 신고접수 348건", 2016.11.28.
- 로앤비 www.lawnb.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수록논고 일람

수록 월	제목	필자
	공사 설립 취지 및 배경	종합기획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 8월	유동화제도	유동화기획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시장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언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제도의 개요	유동화기획부, 신용보증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년 9월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외 주요 주택금융 전담기관의 업무현황 비교	장근익, 서승남/ 한국주택금융공사 종합기획부 중장기 경영전략 TF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손 욱/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차장
2004년 10월	우리나라 단기지금시장(Money Market)의 현황과 가격결정기능 제고방안	류창범/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자금운영담당 상무
	호주의 주택금융시장	권경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장
	부동산시장의 선진회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2004년 11월	2005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 과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모기지론 이용실태 조사결과	안홍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과장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상관관계 분석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12월	한국경제 : 2004년 회고와 2005년 전망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 채권시장의 최근 동향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대행
	2005년 이후 한국부동산 시장의 두 가지 문제	권혁부/ 대신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년 1월	MBS발행확대를 위한 모기지론의 활성화 방안	김진수, 이 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3년
	학자금대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개발부장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이사
2005년 2월	[주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박성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관리부 과장
	유럽의 주택 자가소유율 차이에 관한 비교분석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MBS시장의 활성화 방안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5년 3월	영국 주택금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혁신기획실 대리
	주요국의 모기지보험제도 운용현황과 시사점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5년 4월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백상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관리부 변호사
	프로젝트금융보증제도의 개요	차경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부 1팀장
2005년 5월	미국 주택금융의 개요와 특징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주택저당채권가격 평가와 위험측정	이준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05년 6월	미국 정부지원 주택금융기관의 최근현황과 시사점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의 경영성과	이기영/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5년 7월	국채시장 활성화방안과 장기채시장에 대한 전망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주택경매에서의 말소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고찰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 · 부장판사
2005년 8월	내로운 학자금대출제도의 소개	정정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유동화부 학자금발행팀장
	명의대여여신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5년 9월	바젤॥ 도입에 따른 모기지 보험의 역할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혁신기획실 과장
	우리나라의 역모기지론 취급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태식/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차장
2005년 10월	통합도산법의 주요내용	이무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법무팀장
	2006년 금리 전망	서철수/ 대우증권 선임연구원
2005년 11월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제도 현황	윤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 신사업추진 T/F 팀장
	우리 經濟의 最近 動向 및 2006年 展望	서원석/ 한국은행 조시국 차장
2005년 12월	주요국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조점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과장
	가계의 금융자산 · 부채, 부채부담능력 및 부채조정	홍경식/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과장
2006년 1월	미국 모기지시장에 현존하는 위험과 시사점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1팀장

수록 월	제목	필자
	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증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6년 2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전후한 시장동향의 변화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017 00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보험시장 참여방안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06년 3월	선진국 부동산개발 및 지금조달 사례와 시사점	박민규 · 임효언/ 교보증권 프로젝트금융팀 과장
	미등기건물에 대한 대위등기신청 및 집행방법	윤 경/ 사법연수원 교수 · 부장판사
2006년 4월	우리나라 대출모집인 제도와 미국의 Mortgage Broker 제도 운영현황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200014 501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 붕괴 가능성과 거시경제변수	김영익/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2006년 5월	공적보증 역모기지 정착을 위한 상품개발 방향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사업추진T/F팀장
	후분양제도 시행과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 방안	조성진/ 대우건설 프로젝트금융팀 부장
2006년 6월	공적보증 역모기지 계리모형의 이해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사업추진T/F팀장
	장기 주택가격 전망에 관한 소고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1006년 7월	미국 주택금융기관의 e-모기지 운영 현황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전문역
1006년 8월	한 · 미 FTA 서비스협상과 소비자 이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006년 9월	MBS 해외발행과 국내발행 비교	김중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대리
0002 02	보증채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06년 10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의 수요행태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파트 특성요인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철순/ ㈜와이즈에프엔 대표이사
006년 11월	미국 모기지컴퍼니의 성장발전과 운영현황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조사연구팀장
	최근의 경제상황 및 2007년 전망	김상기/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006년 12월	유럽의 주택금융 개요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2007년 주택 · 부동산 경기전망	강미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1월	학자금 대출금리와 유동화에 대한 이해	임남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대리
	역시금 대출입니되 ㅠ중외에 대한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주택금융 : 기회와 한계	손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2007년 2월		
	역모기지의 대출종료확률에 관한 연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상황	마승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 연구위원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
2007년 3월	Excess Spread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장철영/ 한국신용정보 평가시업본부 S/F평가실 책임연구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의 선진화	장순택/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수석조사역
2007년 4월	신BS협약 도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융환경의 변화	김기성/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부동산선물옵션의 이론과 사례	오성미/ 한국감정원 연구원
2007년 5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체계 개선에 관한 소고	권병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부장
	주택관련 세금의 이해	이삼남/ 한결세무법인 대표이사
2007년 6월	주택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	김갑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장
	고령화시대와 주택연금의 활용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장 배다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2007년 7월	미국 학자금대출제도의 고찰을 통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발전방안	류기윤/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팀장 윤준철/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신용보증부 주임
2007년 8월	프로젝트금융보증을 활용한 주택공급지금융에 관한 연구	김용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BK연구팀 박사후연구과정
7001 C 05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역할과 성과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대리
200717 601	초과유동성 및 자산가격간 선후행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2007년 9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행태	조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과 소멸시효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07년 10월	일본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소개	김대근 CFA/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영업부 과장
	은행채 발행 급증의 원인 및 전망	신동준/ 삼성투신운용 선임 Strategist
	I	L'OT / DOTTE O L'E UNE DI DEUIS

수록논고 일람

수록 월	제목	필자
	2008년 채권시장 전망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전략팀장
2007년 12월	KHFC 조기상환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류수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차장 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주임
2008년 1월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과장 홍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배다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 유동화의 현황 및 시사점	최은영/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
190 = 10000	금리 급등과 스왑시장간 관계 및 시사점	한재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2월	미국 공적보증 역모기지(HEOM) 모형의 이해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대리
190 = 10000	Covered Bond 시장 및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장철영/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이사
2008년 3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	김대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주임
00001= 491	CR REITs의 제도운용 및 향후 전망	전광섭/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교수
2008년 4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 제문제	류제성/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변호사)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의 가계부채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08년 5월	2007년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향후 운용방향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업무부 모기지론 마케팅파트장
000011001	스태그플레이션 아래 통화정책 및 자산가격 변화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
2008년 6월	유동화자산관리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연구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2008년 7월	주택구입능력의 측정과 분석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지원본부 본부장(경제학 박사), 오택균/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통계분석파트장
	해외 모기지관리용역권 회계기준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최선아/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주임
	모기지보험의 시장현황과 역할	유제만/ 젠워스모기지보험 이사
2008년 8월	변제자대위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대리
2008년 9월	미국 정부후원 유동화기관의 최근 동향과 평가	유석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부장 최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주임
	주택연금 수요실태	평생금융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000014 1001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현황과 향후 전망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10월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관한 연구	강승모/ 한국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 과장
0000174481	소액주택금융의 지금조달과 대출기법	손 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2008년 11월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행태	평생금융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0000174081	2009년 채권시장 전망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
2008년 12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관리방안 연구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관리부 대리
000014 401	2009년 부동산 전망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1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주택금융시장 환경변화와 시사점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180 - 10000	새로운 금융위기의 발현과 금융회사의 자동적 자본금확충제도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년 2월	개인회생제도와 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소고	강범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채권관리센터 주임
	해외기관의 모기지 가격결정 모형 개발사례 및 시사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3월	주택분양가 규제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전광섭/ 영국 버밍엄대학교 주택지역연구소 연구위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대리
	신용위험관리측면에서 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문제점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9년 4월	모기지 스왑의 발행구조 및 효과	서승기/ 한신정평가 선임연구원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대리
	인구구조와 가계자산구성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수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위험 및 헤지거래	이용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조사연구파트장
	2009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김영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2009년 6월	모기지 Pricing과 MBS 발행 활성화	원종현/ 한국신용평가㈜ ABS1실 수석애널리스트 한종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대리

수록 월	제목	필자
	사례분석을 통한 해외 부동산투자의 기회와 위험분석	김형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7월	미분양 대책과 건설사 P-CBO구조에 대한 고찰	정종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차장
000017.001	유치권에 관한 소고	유병일/ 법무법인 헌암 변호사
2009년 8월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윤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대리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경영학 박사)
2009년 9월	미국의 공적역모기지제도의 리스크관리와 시사점	서주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한국의 주택 및 주택금융 시장	유승동/ 한국주택금융공사 차장
	미국 민간 RMBS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서승기/ 한신정평가 선임연구원
2009년 10월	주택연금 이용자 특성 분석과 향후 리스크 관리방향에 관한 제언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미국 주택금융위기와 패니매 · 프레디맥의 구제 방안	강승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대리
200014 1101	200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연구부/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 11월	외환관리 정책의 재조명과 바람직한 외환정책	이대기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채권시장 전망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2009년 12월	미국 MSR(Mortgage Servicing Right) 제도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대리
001011101	2010년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전망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0년 1월	국가계약법의 제문제	문은경/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 변호사
2010년 2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율과 부도율의 Competing Risk에 관한 연구	조성훈/ 한국기업평가 RSM2실 팀장(경제학 박사)
	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대리
001013 00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검토	이재민/ 법률사무소 혜명 변호사
2010년 3월	아시아 주요국 주택금융기관 개요	최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주택과 양도소득세	김현준/ 국세청 법무과장
2010년 4월	누가 주택을 구입하였는가?	김형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금자리론 수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안정 정책과 주요 이슈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철영/ 한국정책금융공사 구조조정국 과장
2010년 5월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 주택 및 토지시장의 동향과 정책 과제	강정규/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파산, 면책제도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강범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실 대리
2010년 6월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와 금융시장에의 영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0년 0월	Synthetic CDO 구조의 소개	최고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대리
2010년 7월	2010년 히반기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과 시사점	신일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차장
201013 02	해외 Covered Bond 발행구조와 시사점	전광섭/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정진옥/ 우리은행 이문동지점 부지점장
2010년 8월	거래빈도가 낮은 지역의 반복매매지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방두완/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박재경/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추심소송과 소멸시효	문영기/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2010년 9월	국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공적보증기관의 역할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와 우선변제권	문은경/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 변호사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방안	차경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재개발부 수석부부장
	국내 역모기지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홍성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대리
004013 4401	미분양 주택의 도시별 분포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학부 부동산전공 교수
2010년 11월	일본 모기지대출 및 유동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정주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과장

수록 월	제목	필자
	2011년 채권시장 전망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2011년 주택시장 전망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010111001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2010년 12월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주택특성 실거래지수, 반복매매 실거래지수, 호가지수의 비교분석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매매가, 전세가의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및 시사점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004413401	2011년 경제전망	공 철/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2011년 1월	주택구입능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해외 사례 분석	김다스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대리
	주택개발사업 지금조달시장의 현황과 변화 방향	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2011년 2월	KHFC MBS 발행구조 최적설계 모델 연구	김기성/ 한국주택금융공사 미래전략부 대리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구조의 발전방향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1년 3월	판례평석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심종원/ 건국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 연구실장
2011년 4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주택금융공사 장기고정 금리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1년 5월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위험분석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모기지론 잠재수요자들의 선호 상품구조에 관한 연구	김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 정책과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년 6월	2011년 하반기 금리전망	신동준/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판례평석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응소행위"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주택가격과 거품 그리고 주택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학부 부동산전공 교수
2011년 7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시장 현황 점검	신승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과장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가 국/ 한국은행 조시국 과장
2011년 8월	전지증권제도 관련 법적 논점 검토	이동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과장
	공유관계에 관한 소고	김도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1년 9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차장
2011년 9월	판례평석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몰취 규정"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부 변호사
	은퇴빈곤층(Retire Poor)의 추정과 5대 특성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원
2011년 10월	다계층 MBS(CMO)에서 콜금지기간과 콜한도가듀레이션에 미치는	병원 원 원대성제한 구선 성제한 구선 보연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116 102	디게등 MDX(MMO)에서 글러시기산의 글완도기뉴네이산에 비시는 영향분석	학년구/ 중경대학교 성경대학 교구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 연구위원
	2012년 채권금리 전망	이정준/ HMC 투자증권 연구위원
2011년 11월	덴마크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고찰	조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관리부 대리
	2012년 세계 및 한국경제 전망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2011년 12월	판례평석 "파산면책과 관련된 허법재판소 판례"	이은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변호사
	2012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	기술이 기속되었다.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다.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다.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다.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다. 기속되었는 기술이 기속되었다.
2012년 1월	2011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이동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과장
	2011년도 구작급형 및 모급시나는 구표됩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최형석/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2년 2월	전성적인 조우성별을 위한 구적한금 별성와 정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유동화자산관리 선진화 방안연구	의왕역/ 중력대역교 성정역과 교구 송인화/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대리
	국내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현상과 정책적 과제 : 수도권	중인회/ 인지구택급용증시 파송외증년구 네디
2012년 3월	국내 구역사정의 마이클테이션 연장과 정책적 회제 : 구도년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가능성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1년 주택공급 55만 호의 구조적 의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캐나다 주택금융제도가 한국 주택금융제도 개선방향에 주는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2년 4월	시사점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3대 사업부문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전략	성영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1본부장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모기지 유동화 시장 환경 점검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5월	금융위기 이후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함종영/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동산통계센터 연구원
	진정양도에 관한 법률의견서(True Sale Opinion) 수취에 관한 재조명	윤성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
001017 001	20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본부장
2012년 6월	공사 적격대출 출시배경과 시장유동화 발전을 위한 제언	조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 대리
2012년 7월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 및 시장전망	서승기/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

수록 월	제목	필자
	미국의 주택 압류 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여건 변회와 정책 현안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012년 8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관련 금리위험 헤지에 관한 소고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401400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관련 리스크관리의 이해	배성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과장
2012년 9월	2012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김성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차장
	주택시장 변동과 정부의 역할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2012년 10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2년 11월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기능 잠재수요분석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홍콩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의 이해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주택연금의 역할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13년 금리전망 : 순환(cyclical)기류, 저공비행 일시 이탈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위원
2012년 12월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안으로서의 공동체토지신탁(CLT) 소개 및 금융 관련 이슈 검토	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00.4014.01	민간 주택임대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안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3년 1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향후 시장 전망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1017 001	2012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2013년 2월	주거복지 수요의 확대와 정책방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변동준/ KCB연구소 책임연구원
2013년 3월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치화/ 기획조정실 변호사
	부동산 PF 참여자의 리스크 분담방안	이국형/ 하나다올신탁 전무
2013년 4월		문영기/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금융시장에서 소비자보호 : 잠재적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유승동/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조교수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2013년 5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협력사업1팀장(실물자산연구팀 겸임)
20102 02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동태적 변화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4013 001	보증채무에 관한 소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과장
2013년 6월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소고	최우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주임
001013 701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2013년 7월	글로벌 금융의 불확실성 시대	신상기/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3년 8월	2013년도 하반기 채권 금리 전망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 FICC 분석팀 팀장
2013년 0월	전세시장 불안 요인 분석과 해소 방안 연구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최승순 · 박영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3년 9월	미국 공적 보증 역모기지의 리스크관리 기법 및 정책적 시사점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2013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팀장
2013년 10월	주택가격과 모기지론 조기상환율에 관한 소고	한영하/ NICE P&I 평가사업본부 본부장
2013년 10월	하우스푸어(House Poor)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회방향 모색	윤성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대리
2013년 11월	조기상환율 요인분해 및 PSK(Prepayment Standard Korea)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11월	한국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결정요인에 관한 소고	이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과장
001017.001	2014년 금리전망 : 회복의 갈림길, 과속금지	윤여삼/ KDB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채권팀장
2013년 12월	주택구입기회지수(Korea Housing Opportunity Index)의 소개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팀장 남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치장
2014년 1월	주택 미분양에 대한 해석과 대책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확재훈/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팀
20141.15	2013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남현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치
2014년 2월	한국 채권 발행시장의 특징과 전망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 내미처/ 하고즈태그오고나 오도하즈퀴비 즈이
	캐나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제도의 이해	서민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주임
004 41 7 001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례연구	이철우/ 한국주개금융공사 신탁자산부 팀장
2014년 3월		
2014년 3월	정비사업의 현황과 보증상품 도입방안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전개와 중앙연금기금의 역할	정영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수록논고 일람

수록월	제목	필자
201 413 EQI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박성욱, 박종상/ 금융연구원 거시 · 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2014년 5월	덴마크 커버드본드 시장 및 특징	김봉민/ NICE신용평가 SF1그룹 선임연구원
004 414 001	2014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분석 실장
2014년 6월	금융위기 이후 GSE 개혁방안과 시사점	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 팀장
004 41 7 701	2014년 히반기 주택 · 부동산 경기 전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7월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김종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조사연구팀 차장
004 414 001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2014년 8월	금리기간구조와 거시경제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4 414 001	주택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변화 가능성 전망	심종원/ 한국감정원 부연구위원
2014년 9월	2014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금융분석팀
0044174001	미국 SFR채권의 발행현황 및 시사점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2014년 10월	주택담보대출 표준부도모형 실증연구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14174101	주택시장관련 지수의 현황 및 활용방안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4년 11월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류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대리
004 414 4001	주요 유럽 국가들의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12월	2014년 주택시장 결산과 전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4514.01	해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모형의 검토와 시사점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5년 1월	2014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통계분석팀
	에너지효율주택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수요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5년 2월	표조되고 나타되어 기대편의 그러나에 가는 어그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표준지공시지가의 과세평가 균일성에 관한 연구	양지원/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004514.001	북한 금융의 현황과 주택금융의 과제	송현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2015년 3월	주택연금 사전기입자 특성 분석	홍성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 과장
	안심전환대출의 경제학	박연우/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2015년 4월	우리는 왜 독일 주택금융시장에 주목하는가?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고령자의 전문후견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노영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과장
004513501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한 사전적 위기대응체계 수립방안에 대한 소고	김정기/ 한국리스크관리 전무·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2015년 5월	2014년 개정 '부동산 3법에 대한 검토'	윤진성/ 한국주택 금융공 사 기획조정실 변호사
001514.001	2015년 하반기 금리전망과 채권투자전략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자산분석실장
2015년 6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안심전환대출의 역할	한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주임
001513 701	거시경제 변화와 차주 특성을 분리한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테스트	최성호, 임상빈/ KCB연구소 연구원
2015년 7월	역모기지의 장수리스크 발생요인 분석과 관리 방안	강현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주임
001EI = 0의	2015년 상반기 크레딧 시장 동향과 하반기 전망	최종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2015년 8월	전세지금보증 공급과 주택 전세가격 간의 관계 분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EI 109	한국 주택금융시장의 고유한 지표들	고제헌,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2015년 9월	주택협동조합 성장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한 소고	김형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001[] 100	중국의 과제 : 경제 불균형 해소와 신 성장동력 확보	한정숙/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2015년 10월	고령자 보유 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 및 변화에 대한 미시적 연구	김동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대리
0015131101	2016년 채권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신 얼/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전략 애널리스트
2015년 11월	인터넷 검색과 주택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안세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001513 1001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임대차법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오연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대리
2015년 12월	2015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통계분석팀
	금융시장의 발전사와 주택금융시장의 형성	정재웅/ 이주대학교 금융공학과 박사수료
2016년 1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요인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변준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주택시장의 특징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수록 월	제목	필자
2016년 2월	지방 주택시장 현황 진단	김성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동산연구실 차장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동산연구실 대리
	2015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
001013091	해외 발행구조 분석을 통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고찰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부장
2016년 3월	미국 임대주택유동회증권 사례의 국내 시사점	김형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00101= 491	기업 신용등급 변동 추이와 시사점	김계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4월	빅 쇼트 혹은 롱 워크	정재웅/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박사 수료
2010년 5일	2016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신 얼/ 현대증권 채권전략 애널리스트
2016년 5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고찰	이동행/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
00101=001	과거 장기 경기 사이클로 바라본 향후 글로벌 경기 전망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2016년 6월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001013 701	중국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충격에 대한 준비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장
2016년 7월	정책학에서의 주택연금 제도의 성과요인에 대한 고찰	황재훈/ 주택금융연구원 국제협력팀장
201013 021	위안화 시장 활성회를 위한 주요 과제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8월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홍정의/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01013 091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의 점검	손정락/ 하니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6년 9월	주택구입부담지수(K-HA)의 추이와 시사점	김용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차장
001의 10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및 과제	이화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과장
2016년 10월	운용배수를 통한 주택연금 위험관리 적정성에 대한 소고	송인화/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과장
2016년 11월	집합건물의 대지 구분소유권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김도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10년 11월	2016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통계분석팀
201613 1201	한국주택금융공사 패스스루(Pass-Through) MBS의 발행구조와 의미	정수현 /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 과장
2016년 12월	시장리스크 측정지표의 변화 : VaR에서 Expected Shortfall까지	송완영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과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 완화	김동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대리